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'95. 8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사유

- 지방공무원법개정 (법률 제4797호, '94. 12. 22)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종류에서 「읍장, 면장, 동장」을 삭제
- 지방자치법개정 (법률 제4741호, '94. 3. 16)으로 별정직 읍.면.동장이 일반직으로 전환

□ 주요골자

- 읍.면동장 일반직화에 따른 관계조문 정리

□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
-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

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

①이 조례는 법2조제3항제2호의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